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없음
- 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 : 해당없음

(6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	소규모 펀드수					소규모펀드 비율 (=J/E)	제출기준일
		전체 (A)	모범규준1) 제4조제3항 제1호펀드 (B)	모범규준제4 조제3항제2 호펀드(C)	모범규준제4 조제3항제3 호펀드(D)	차감 계 (E=A-B-C- D)	전체(F)	모범규준제4 조제3항제1 호펀드(G)	모범규준제4 조제3항제2 호 펀드(H)	모범규준제4 조제3항제3 호펀드(I)	차감 계 (J=F-G-H-I)		
GSMC	A01018	88	0	0	0	88	3	0	0	0	3	3.41	20190228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



신한BNP파리바
자 산 운 용



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